

❖ 정부시책 ❖

## 輸入전기용품 原產地표시 강화

앞으로 수입 전기용품은 원산국의 제조지를 시·도 단위까지 표시하고 수입판매업체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병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통산부는 전기용품의 외국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산을 불문하고 제품에 제조업체명 외에 제조공장 소재지(국가명과 시·도까지)를 표시토록 하고 수입 전기용품인 경우 수입판매업체명과 주소·전화번호도 병기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제조공장 소재지의 표시는 제조업체명 뒤에 관호를 사용해 표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조공장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전기용품으로 전열기구류, 전동력응용기계류, 광원응용기계기구류, 전자응용기구류를 정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수입 전기용품에 대해 '원산지 제조국명 및 제조자명'을 표시토록 한 전기용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삭제하는 대신 원산지표시를 대외무역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설 준공

공공시설물에 국내 최초로 건물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설치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산업부와 창원시는 최근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설 준공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준공된 태양광발전시설은 통상산업부

의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5년 1월부터 추진, 그동안 4억원(국비 3억 2천만원, 지방비 8천만원)이 투입되어 삼성전자(주)에 의해 개발된 30kW급의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대체에너지 관련기술과 이용시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

리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창원시청 별관 민원동 옥상에 지난 9월말에 설치완료하고, 1개월간의 시험 운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전지를 건자재와 일체화하여 건물외벽이나 유휴공간에 설치하고, 태양전지에서 발생된 전력을 건물내부의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전의 전력계통선에 연계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발전가능한 최대량을 발전하여 공급하고, 부족한 전력만 한전에서 보충 사용도록 되어 있어 태양광발전량 만큼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설치된 시설은 40W짜리 형광등 800개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지녔고, 연간 4만 5천kW의 전력을 생산하여 창원시 청사의 전등부하전력의 상당부분을 자체 수급하게 되며, 또한 원격제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창원시청, 한국전기연구소, 삼성전자(주) 등의 컴퓨터와 연결되어 시간별, 일별, 월별 발전상황과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각종 자료를 현장에 가지 않고도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공동연구시스템이 형성되므로써 핵심기술의 고도화와 설치비용의 절감 등에 대한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여름철 전력피크로 인

해 발생되는 전력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붕용, 외벽재용, 유리창용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기존 발전방식과 달리 전력생산에 공해 물질이 발생되지 않아 그린라운드(GR)등 환경문제가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발전기술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동안 통상산업부에서는 유망 대체에너지 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을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중점 개발하여 제주도의 마라도, 충남 호도, 경남 와도, 전남 하화도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제주도 월령, 전남 무안 등지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공급 및 실증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시범보급사업에 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으로 '98년 말까지 제주도 구좌읍에 1,200k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립중에 있는 등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 개선

- 중소기업청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하였다.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출국가로부터 추천받아 현지 실사와 사후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가 선정하던 현행 송출기관 선정방법을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선정기준에 합당한 송출기관을 송출국가가 선정토록 하고, 기준미달 송출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도입,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문사후관리업체를 지정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연수생 도입기관인 중기협중앙회가 사후관리토록 함. 다만, 현재 지정된 사후관리업체는 중앙회와 관리계약기간이 끝나는 '99 상반기까지 사후관리토록 함.
  - 송출기관별 연수생 배정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연수업체에 배정하고자 중기청으로부터 국가별 연수인력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회가 송출기관에 재배정토록 함.
  - 송출국 송출기관에 범법자, 건강이상자 등 자격미달 연수생을 송출하였거나 연수생이 국내에서 범법자가 되었을 경우 연수생을 출국시키고 송출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을 통한 연수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로부터 연수생을 보호하고자 연수희망자에게 한국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에 따라 모집연수생의 일정률(선발률은 연차적으로 높일 계획)을 우선 선발토록 함.
  - 연수업체의 연수수당 체불 등에 대비하여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수당 등의 지불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금예치제도(1인당 : 30만원)를 연수생의 연수수당 지급을 보장하고 연수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1만원을 납부하는 100만원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전환
  - 중소기업청지침과 중앙회 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외국인 연수제도 운영 관리규정을 중기청 지침으로 일원화하여 중소기업, 외국인력, 송출기관 등 이해당사자가 용이하게 규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지정·개발 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7. 11. 21 입법 예고하였다.

###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없이 지정 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규모를 30만 평에서 100만평으로 확대하고
-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관련하여 관계 부처 협의기간을 15일로 명문화하여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따른 소요기간 을 최소화하는 한편
- 장기 미분양중인 산업용지를 조기에 해소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압박과 입

주기업의 부지매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준공후 1년 이상 미분양 산업 용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 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 동 시행령(안)에 대하여 '97. 11월중 관 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어 서 12월중에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전체 지방산업단지 134개소중 100만평 미만인 117개소(87%)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개발될 대부분의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정·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 고용조정 지원 대상 업종 확정·발표

제사·방적 및 직조업 등 최근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75개 업종의 3,180개 사업장(근로자 297천여명)에 대한 휴업, 직업

전환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조정지원이 대 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근로자수가 1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고용조정지원대상으로 추가지정(기 지정업 종 석탄 광업 등 5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동부는 최근의 고용불안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지정 기간은 종래(3년)보다 단축시켜 1년 6개 월('97. 10. 1~'99. 3. 31)로 하되 고용량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97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97. 4/4분기의 고용조정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향후 업종지정제도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매분 기별로 점검·보완하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고용조정을 지원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 업종에서 이직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업종 추가지정으로 인한 수혜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기준 10개 및 세세분류기준 65개 업종을 추가 지정할 경우
- 3,180개 사업장, 297,400명의 근로자가 다음의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며, 이는 광공업 전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18,498개소)의 17.2%, 피보험자(2,199천명)의 14.0%에 해당되며
- '95년 지정된 5개 업종(지정기한 '98.

6월말까지)의 223개 사업장, 58,427명을 포함하면 광공업 적용 사업장의 18.4%, 피보험자의 16.8%가 수혜대상이 됨.

#### 휴업수당지원금

##### ○ 지원요건

- 경제적 이유로 매월 소정근로일의 1/15 이상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기업

##### ○ 지원금액

- 근로자에게 지급된 휴업수당액의 1/2 지원(대규모 기업은 1/3)

#### 직업전환훈련지원금

##### ○ 지원요건

-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고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

##### ○ 지원금액

- 훈련비용 전액 지원
- 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액의 1/2(대규모 기업은 1/3) 지원

#### 인력재배치지원금

##### ○ 지원요건

- 업종을 전환한 후 기존 업종에서 고용하였던 근로자의 6할 이상을 재배치하여 계속 고용하는 기업

##### ○ 지원금액

- 인력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액의 1/2(대규모 기업은 1/3)을 1년  
간 지원

### **채용장려금**

#### ○ 지원요건

- 한분기 동안 지정업종·지역에서 고용 조정으로 이직된 자 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로서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자(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이직후 3월 이상)를 1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을 채용한 기업

#### ○ 지원금액

- 채용한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액의 1/4 (대규모 기업은 1/5)을 6개월간 지원

### **적용훈련지원금**

#### ○ 지원요건

- 지정업종·지역사업장, 대량고용변동 신고사업장, 재취업알선계획 신고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를 채용한 후 이들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한 기업

#### ○ 지원금액

- 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액의 1/2(대규모 기업은 1/3)과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비용 지원
- 하나의 적응훈련에 대해 6월을 한도로 지원

#### ■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전기관련 업종)

- 31103 전자변성기 제조업
- 31903 자석 및 자석제품제조업

■ 지원기간 : 1997. 10. 1 ~ 1999. 3. 31